

[] 주요방산물자
[] 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9일		
수출대상국		신용장 개설 및 계약예정자				
물품분류 번호(HS)	품명	가격	수량	예상단가	예상금액	공급업체
수출내용	수출정보 입수경위					
	수출방법					
	수출실적					
예비승인	예비승인 번호 □□-□□-□□□				예비승인 유효기간	
	예비승인 조건					

「방위사업법」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요방산물자(국방과학기술)의 수출예비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방위사업청장 귀하

「방위사업법」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(국방과학기술)의 수출을 예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방위사업청장

직인

신청인 첨부서류	1.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수출업신고필증 사본 1부 2.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3.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 경위서 1부 4. 구매국 및 주계약업체에 제출할 제안서 사본과 관련 자료 각 1부 5. 수출사업 범위, 당해 물자 또는 기술의 원천, 기술료, 기술이전 통제품목 여부, 수출파급효과 및 제3국 이전가능성에 대한 설명자료 각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첨부서류의 진위 여부 등	

